

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3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6.
제출자	거창군수

폐지이유

- “ 「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 ”는 1999. 2. 8. 사회65246-10046호로 시달되어(노인복지법 제38조,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5조)의 근거에 의거 1999. 9. 11. 조례 제1533호로 제정되었으나,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-4134호(2004.10.22.)에 의거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 되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 되어, 현행 “거창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”는 이를 폐지함.

폐지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